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가단51999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21. 1. 14.

판결 선고 2021. 3.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8,874,370원 및 그중 87,254,054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8. 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주식회사 A 사이에 2018. 12.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 다.
나. 피고 C은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2. 3. 접수 제944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번호 : D, 보증금액 : 90,000,000원, 보증기한 : 2018. 10. 26.'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제5조(사전구상)

1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이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 E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때
5.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6.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7. F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금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8. 재단이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

행청구를 받은 때

9.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

에 대하여 위 제2호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본

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10. 본인이 연대보증한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재단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사유가

발생한 때

11. 전 각호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나.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2018. 11. 16.

최종적으로 '보증기간 2019. 4. 26., 보증금액 85,500,000원'으로변경되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을 통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2019. 5. 15.부터 위 대출의 원금을 연체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그 무렵 원고에게

원금연체를 사유로 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의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0. 1. 중소기업은행에게 원금85,500,000원과 이자

1,754,054원 합계 87,254,054원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의 구상권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하여 기지급한 보험료

및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금도 피고 A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에 따라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가지급금(채당금)은

1,068,666원이었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에 따라

원고가 정한 요율 등에 따른 추가보증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따라서 피고 A이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551,650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위변제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8. 2. 1.부터 연 10%이다.

바. 피고 A은 2017. 2. 16. 피고 C으로부터 19,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사. 피고 A은 2018. 12. 3.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23,4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2. 3. 접수 제944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A, B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88,874,370원(= 대위변제금 87,254,054원 + 가지급금 1,068,666원 + 추가보증료 551,6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7,254,05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8. 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8. 12. 3.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피고 A은 그 무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후술하는 바와 같으며, 피고 A의 재무상태 악화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원고가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결국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악의 추정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평택시 G 소재 건물, 평택시 H 토지, 평택시 I 토지로서 시가 상당액이 786,399,600원¹⁾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당시의 피고 A의 소극재산은 원고 채무 88,874,370원, 피고 C 채무19,000,000원, J캐피탈 채무 122,398,928원, 기업은행 채무 403,660,234원, K조합 채무204,567,940원, 공적보험료 27,002,460원, 국세 55,211,760원, L 채무 11,849,250원, M채무 100,000,000원, N 주식회사 채무 50,000,000원 합계 1,082,564,942원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 A이 피고 C에게 부담하는 2017.2. 16.자 19,000,000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2. 3.에서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C이 2017. 2. 16. 피고 A에게 19,000,000원을 실제로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 A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 C으로서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알지도 못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 C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 A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C이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민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평택시 G 대 214.3㎡

1) 이 사건 부동산, 평택시 I 토지, 평택시 G 토지의 감정가액은 784,399,600원이고, 평택시 H 토지 중 피고 A의 지분은 1187분의 64.95인데, 피고 A은 2018. 4. 20. 200만 원에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

